
교 류 협 력 서

대구대학교- 대구메리어트호텔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

MARRIOTT
DAEGU

대구대학교 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와 대구메리어트호텔 (이하 “호텔”이라 한다)은 대구대학교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호텔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조 [목적]

본 협약은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편의제공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[대상]

본 협약에 따라 호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.

제 3조 [이용 내용]

대학교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.

디럭스 객실 조식 불포함 가		
[10% 부가세 별도]		
일요일-목요일	금요일	토요일
상한 가 240,000원		
평상가 대비 10%할인		
할인 예약 불가 기간		
2024년 5월 4일 - 5일 / 2024년 12월 24일		
조식 할인 가		
인 당 27,000원 (10% 부가세 별도)		
*객실 예약 시 사전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.		
객실 업그레이드 비용		
엠클럽 킹: 인 당 60,000원 + 부가세 10% 별도		

제 4조 [예약 변경 및 취소]

대학교의 이용자는 예약을 변경 및 취소할 경우 호텔의 예약 및 이용

규정에 따르며, 호텔은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5조 [협약 기간 및 해지]

1.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, 상호 간 별도 해지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.
2. 각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을 해지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해지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6조 [협력 및 교류 방안]

1. 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협력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하며 업무를 추진 한다
2. 협력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7조 [기타]

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각 기관의 합의를 통해 조정한다.

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 한다

대구대학교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총 장 박 순 진 (인)



대구메리어트호텔

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6

대표이사 정 종 찬 (인)

